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 우리WON어린이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601	1형(재해장해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본형
	2형(일반암진단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본형

다만, ‘기본형’의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을 “무배당 우리WON어린이보험 2601”으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80세, 100세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0세 ~ 15세	월납
기본형	30세	5년납, 10년납, 15년납, 30세납	0세 ~ 15세	
		20년납	0세 ~ 10세	
	80세, 100세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0세 ~ 15세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태아보장기간’이라 한다)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함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10개월	전기납	태아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아래의 특약을 의무부가 하여 판매한다.

- 무배당 주산기입원 및 통원보장특약: 특약 가입금액 최저 1만원부터 2만원 한도
- 의무부가사유 : 피보험자가 태아인 계약에 대해 태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부가

나. 2형(일반암진단보장형)을 가입할 경우 아래의 특약을 의무부가 하여 판매한다.

- 무배당 우리아이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이 보험 가입금액 및 무배당 우리아이일반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금액 합산의 0.2배 이내 한도
- 의무부가사유 : 암에 대한 보장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부가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다자녀 가구 할인

- 1)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2명 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2.0%를 할인한다.
- 2) 할인 적용 방법

가) 가입시 신청 :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나) 가입후 신청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승인한 경우 '1)' 에서 정한 '다자녀 가구 할인'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한다. 다만, 승인 전 이미 '1)' 에서 정한 '다자녀 가구 할인' 요건을 충족하여 할인 대상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미적용된 할인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나. 부모 기가입자 할인

이 보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회사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정상 유지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의 영업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2.0%를 할인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다. '가' 및 '나' 에 해당하는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다.

라. '가' 및 '나' 의 할인을 받고자 할 때 계약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 기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다.

나. 당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1형(재해장해보장형) 약관 제46조(출생통지) 및 2형(일반암진단보장형) 약관 제47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험료 선납이 제한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1형(재해장해보장형)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2형(일반암진단보장형)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1형(재해장해보장형)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2형(일반암진단보장형)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본다.
-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
-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는다.

14. 태아가입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

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태아의 가입은 임신사실 확인 후부터 임신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 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는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이 때 보험료는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이 때 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 라. ‘나’ 및 ‘다’ 항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피보험자의 성별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 마. ‘라’ 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바. ‘라’ 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및 성별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 아. 회사는 ‘다’ 항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15. 예약가입대상특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주계약 가입시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특약(이하, '예약가입대상특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장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예약가입대상특약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장개시나이
무배당 우리아이근시 및 고도근시 진단특약	태아, 0세 ~ 5세	6세
무배당 우리아이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진단특약	태아, 0세 ~ 2세	3세

- 나.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보장개시나이 계약해당일로 하며, 계약자는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보장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납입하여야 한다.
- 다. 회사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 15일 전까지 보장개시 대상 약관 및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계약자가 해당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된다.
- 라. 계약자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시점 이전에 해당 특약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6. 기타

- 가.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 (보험기간이 30세인 경우에 한함)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산출된 주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0%을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만기는 제외한다.
-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라.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 (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예시 기준 : 남자 5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본형

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만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본형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년				
3년				
5년				
10년				
19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 및 이를 보조하는 자동완성 기능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였습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_____ (인/서명)

친권자 : _____ (인/서명)

친권자 : _____ (인/서명)